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 4 차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피해지원사업의 범위 확대 등〉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02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제2217302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피해지원사업의 업무 범위 확대 등	2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02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06.
3. 회 부 일 : 2026. 3. 0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상이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사고는 응급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양평·여주·가평·이천 등 경기 동부권 내 취약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양평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를 통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확대 규정하면서 재활시설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라목,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1. 피해지원사업의 범위 확대 등(안 제2조제8호라목 등)

개정안은 피해지원사업 범위에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 다. (생략) 라. <u>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u> : 제31조에 따라 <u>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공 및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및 자동차사고-----</u>
9. (생략)	9.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제23조의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한다.	② ----- ----- -----.
1. 제31조제1항에 따른 <u>재활시설의 설치 및 재활사업의 운영</u>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 ----- <u>응급의료·재활시설의 설치 및 응급의료·재활사업</u> -----
가. <u>재활시설의 설치와 관리</u> 에 관한 사항	가. <u>응급의료·재활시설</u> ----- -----
나. <u>재활사업의 운영</u> 에 관한 사항	나. <u>응급의료·재활사업</u> -----
다. <u>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과 지정 취소</u> 에 관한 사항	다. <u>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u> ----- -----
라. <u>재활시설운영자의 사업계획과 예산</u> 에 관한 사항	라. <u>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u> ----- -----
마. 그 밖에 <u>재활시설과 재활사업의 관리·운영</u> 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마. ----- <u>응급의료·재활시설과 응급의료·재활사업</u>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3조의4(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제23조의4(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또는 조정한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본다.	② ----- ----- ----- ----- ----- ----- -----.

현행	개정안
1. <u>의료재활사업</u>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생략) ② (생략) ③ <u>재활시설</u>의 용도로 건설되거나 조성되는 건축물, 토지, 그 밖의 시설물 등은 국가에 귀속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u>재활시설</u>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와 설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 사고 후유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2조(<u>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u>)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요건을 갖춘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u>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u>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u>의료재활시설</u> 및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u>재활사업</u>: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고 재활 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u>응급의료·재활시설의 설치에 관하여</u>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u>응급의료·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응급의료·재활사업</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응급의료·재활시설</u>----- ④ -----<u>응급의료·재활시설</u>----- 제32조(<u>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u>) ① -----<u>응급의료·재활시설이나 응급의료·재활사업</u>----- 1. <u>응급의료시설, 의료재활시설</u>-----<u>응급의료·재활사업</u>-----받고 <u>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과목 및 재활</u>-----

현행	개정안
있는 자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로서 <u>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u>는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④ <u>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절차 및 그에 대한 감독 등에</u>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u>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u>)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u>재활시설운영자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법인의 해산 등 사정의 변경으로 <u>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u> 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u>재활시설운영자의</u> 지정을 취소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u>재활시설운영자가</u>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응급의료·재활시설이나 응급의료·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응급의료·재활시설이나 응급의료·재활사업----- ----- -----. ④ <u>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u>----- ----- -----. 제33조(<u>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u>) ① -----<u>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u>-----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응급의료·재활시설이나 응급의료·재활사업</u>----- ----- ② ----- -<u>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u>----- ----- -----<u>응급의료·재활</u>

현행	개정안
지정될 때까지 그 기간 및 관리·운영조건을 정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에게 <u>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u>의 관리·운영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계속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u>재활시설운영자</u>로 본다. 1. 지정취소일부터 새로운 <u>재활시설운영자</u>를 정할 수 없는 경우 2. 계속하여 <u>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u>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제2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그 계속된 업무가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는 <u>재활시설운영자</u>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생략)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5. (생략) 6. 제31조제1항에 따른 <u>재활시설</u>의 설치 7. 제32조제1항에 따른 <u>재활시설</u> 및 <u>재활사업</u>의 관리·운영 8. ~ 14. (생략) 제43조(검사·질문 등) ① 국토교통부	<u>시설운영자</u>----- -----<u>응급의료·재활시설이나 응급의료·재활사업</u>----- --. -----<u>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u>-----. 1. -----<u>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u>----- 2. -----<u>응급의료·재활시설이나 응급의료·재활사업</u>----- ③ ----- -----<u>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u>-----. 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6. -----<u>응급의료·재활시설</u>----- 7. -----<u>응급의료·재활시설</u>----<u>응급의료·재활사업</u>----- 8. ~ 14. (현행과 같음) 제43조(검사·질문 등) ① -----

현행	개정안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u>재활시설</u>,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4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행위에 한정한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u>재활시설운영자</u>나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 및 <u>재활시설</u>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⑧ (생략) 제46조(벌칙) ① (생략)	----- -----<u>응급의료·재활시설</u>-----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u>----- -----.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응급의료·재활시설</u>----- ----- -----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u>재활시설운영자</u> 3의2. 4. (생략) ③ ④ (생략)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 -----<u>응급</u> <u>의료·재활시설운영자</u> 3의2. 4. (현행과 같음) ③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로 본다.

가. 검토의견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제1항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재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1. 의료재활사업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경기도 양평에 국립교통재활병원²⁾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³⁾는 응급의료를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 정의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제30조제2항⁵⁾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
2. 직업재활사업(직업재활상담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16.12.20.>
 ③ 재활시설의 용도로 건설되거나 조성되는 건축물, 토지, 그 밖의 시설물 등은 국가에 귀속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와 설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 재활병원으로,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에게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하여 빠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공공의료기관임(2025.2. 기준 총 335명 근무).
-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 4)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응급의료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생계 지원과 중증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 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치료 제공은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고, 현재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응급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을 피해지원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응급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⁶⁾.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응급의료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교통사고 발생 직후의 응급의료부터 재활까지 단절 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회복률을 높이고 후유장애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경기 동부권 주민들에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반면,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교통재활병원에 응급의료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응급의료 지원은 응급의료기금 등 별도의 재원 체계에서 담당하도록 역

②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6)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확대 규정하면서 재활시설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제안이유, 김선교의원안 2217302).

할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용도에 포함하는 것은 기금 간 기능 중복 및 재정 운용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과 응급의료 기금의 비교>

구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응급의료기금
근거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1 ⁷⁾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⁸⁾
관리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목적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응급의료의 효율적 수행
재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제37조) 등	과징금, 기부금, 정부출연금 등

또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용도를 응급의료 시설의 설치 및 응급의료사업의 관리·운영으로 확대할 경우 분담금⁹⁾ 인상으로 국민의 자

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1(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이하 "기금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외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할 자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등이 해당 납부 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징수하여 정부에 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동차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의 응급의료 취약 문제는 해당 지역 내 병원의 응급실 확충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국토교통부)

현행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 지원사업”을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는 것은 피해지원사업의 구조와 재원 운용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함.

전문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교통재활병원의 기능 저하, 해당 지역 내 기존 응급의료체계와의 관계 또한 고려하여야 하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활용의 타당성, 추가 재정 소요에 따른 분담금 효율상향 필요성 검토 및 이에 따른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국립교통재활병원)

‘후유장애인 재활지원’ 중심 사업에 급성기 단계인 ‘응급의료’를 포함하는 것은 사업 목적과 기능 범위의 혼재를 초래하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

⑤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손할 우려가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기금’ 등 별도 재원 체계에서 그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이를 자동차 사고피해지원 기금에 포함하는 것은 기금 간 기능 중복 및 재정 운용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아울러, 재활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응급의료 기능을 병행하는 것은 기관의 역할과 기능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존부터 수행 중인 재활치료의 연속성 및 집중도 저하 또한 우려됨.

(손해보험협회)

특정 지역의 응급의료 시스템 취약은 지역 내 종합병원급 응급실 확충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전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로 운영되는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함.

개정안과 같이 기금의 용도를 응급 의료 비용으로 확대할 경우, 책임 보험료에 대한 분담금 요율 인상에 따른 전 국민의 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고려할 필요 있음.

문 의 처
02)6788-5575

참고

국립교통재활병원 개요

□ 병원 개요

- 급성기* 전문 재활병원으로서 교통사고 부상자나 후유장애인의 집중적인 전문 재활치료를 통해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
 - * 급성기(수술) 이후 회복 및 초기재활단계
- 설립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후유장애인 등의 재활지원)
- 설립목적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공공의료 실현
- 인원('25.2.1. 기준) : 총 335명(의사 22명, 간호사 116명, 치료사 118명 등)
- 예산('26년) : 11,986백만원(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국립교통재활병원 일반현황 >

구 분	내 용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260
규 모	- 병원동(지하 1층, 지상 7층), 기숙사동(지상 6층), 재가적응훈련관(지상2층) - 대지 90,973.9㎡(27,520평), 건축연면적 43,011.62㎡(13,011평)
병상 수	- 총 273병상(7개 병동)
진료과목	- 총 9개 임상과 운영 * (상설) 재활의학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비상설)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외과
전문재활센터	- 총 4개 전문진료센터 운영 * 뇌손상 재활센터, 척수손상 재활센터, 근골격계손상 재활센터, 소아 재활센터 * 수중재활치료, 로봇(상지/하지/웨어러블)치료, 운전재활치료 등 전문치료 제공

□ 연도별 환자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환 자 수 (명)	총 환자수	113,364	100,416	109,870	115,403	112,924	124,510
	- 외래환자	40,302	27,097	41,547	47,613	47,652	49,135
	- 입원환자	73,062	73,319	68,323	67,790	65,272	75,375
병상 가동률(%)		83.2	86.6	79.3	75.2	74.5	87.1